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42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이훈기 · 최민희 · 장종태  
김남근 · 박지원 · 김 윤  
전진숙 · 황운하 · 양부남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주체는 정보주체인 국민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등은 일반적인 국고 수입으로 귀속될 뿐,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나 피해회복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정보 노출에 그치지 않음.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생활 침해, 정신적 손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개별 정보주체가 손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

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대규모·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4조의2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5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3.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4.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5.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6.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구제 절차 지원
  7.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8.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과징금·가산금 및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64조의3(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u></p> <p><u>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제64조의2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li> <li><u>2. 제75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li> <li><u>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u></li> <li><u>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u></li> <li><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li> </ol>

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3.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4.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5.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6.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구제 절차 지원

7.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8.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

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